



| 보도 | 2024.8.7.(수) 조간 | 배포 | 2024.8.6.(화)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|
| 담당부서 | 자산운용감독국 | 책임자 | 국 장 | 임권순 | (02-3145-6700) | |
| | 자산운용제도팀 | 담당자 | 팀 장 | 심여희 | (02-3145-6717) | |

펀드 의결권 행사·공시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

- 자산운용사가 충실한 펀드 의결권 행사·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도록 지속 점검·지도할 예정 -

점검 배경 1

- □ 금융감독원은 '23.10월 「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」 개정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
 - '24.3월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**간담회**를 개최하여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및 공시를 당부한 바 있음
- □ 아울러, 펀드 의결권 불성실 행사·공시 사례 등을 공개하여 자산 운용사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침을 제공하고자 '24.1분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·공시 내역을 점검

< 펀드 의결권 행사· 공시 제도 개요 >

- □ 자산운용사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**충실하게 행사**하고 그 **행사내용** 등을 **거래소**에 공시
 - (공시 대상) 펀드별 자산총액의 5%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
 - (공시 기한) 전년 4.1. ~ 당해 연도 3.31. 중 행사내용을 매년 4. 30.까지 공시
 - (공시 내용)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,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, 펀드별 소유 주식 수, 운용사와 의결권행사 대상 **법인과의 관계** 등

펀드 보유 주식 및 의결권 행사 현황 ('23.12말)

- □ (주식 보유 현황) '23년말 현재 공·사모 펀드*는 국내 상장주식 76.4조원 (시가총액의 3.0%), 비상장주식 8.2조원 및 해외주식 47.7조원 보유
 - *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외
 - (운용사별) 보유액은 삼성 12.9조원, 미래에셋 12.3조원 및 KB 6.6조원 등 상위 3사 운용사 펀드가 전체 펀드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의 41.6% 차지

< 펀드 보유 주식 규모 > < 상위 5개사 상장주식 보유 현황>

47.7조원(36.1%) 76.4조원 (57.8%) 8.2조원(6.1%) ■ 국내 상장 ■ 국내 비상장 ■ 해외

| | | <u>(단위: 조원, %</u>)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운용사명 | 펀드 보유액 | 시가총액 비중 |
| 삼성 | 12.9 | 0.50 |
| 미래에셋 | 12.3 | 0.48 |
| KB | 6.6 | 0.26 |
| NH아문디 | 3.4 | 0.13 |
| 한국투자 | 3.3 | 0.13 |

- □ (**의결권 행사 현황**) '23년말 현재 펀드 보유 주식 중 **의결권 공시대상** 법인(펀드별 공시로 인해 중복 종목 포함) 비중은 4.8%
 - (행사율)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59%, 그 외 법인은 27%
 - (행사방향) 의결권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93% 이상 찬성 의견 행사

< **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** (단위 : 종목, %) >

| | 보유 종 | ·목 수 [*] | 행사 | | | 행사 방힝 | 생사 방향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|
| 구분 | (A) | 비중 | 행사 종 목 수(B) | 행사율 (B/A) | 찬성 | 반대 | 중립 | |
|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 | 9,349 | 4.8 | 5,473 | 58.5 | 94.6 | 2.6 | 2.8 | |
| 기타 법인 | 183,787 | 95.2 | 49,649 | 27.0 | 93.3 | 4.7 | 2.0 | |
| 합계 | 193,136 | 100.0 | 55,122 | 28.5 | 93.5 | 4.5 | 2.0 | |

^{*} 펀드별 의결권 행사로 인해 각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중복 종목 포함

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점검 결과

< 점 검 개 요 >

- □ (점검 대상) '24.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**274개사** (27,813개 안건)
- □ (점검 내용) ^①의결권 행사·불행사 사유 기재 현황, ^②의결권 행사 내부 지침 공시 현황, ^③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및 ^④의결권 행사의 적정성

① 의결권 행사·불행사 사유의 불성실 공시

-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**투자 판단에 참고**할 수 있도록 안건별 행사·불행사 사유를 **구체적**으로 **기재**하여야 함에도,
- 점검 대상 274개 중 **265개사**(96.7%)가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, '주주총회 영향 미미' 및 '주주권 침해 없음' 등 형식적 기재

< 의결권 행사·불행사 사유 기재 현황 (항목별 중복 가능, 단위 : 개사, %) >

| | | 유형별 불성실 기재 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구분 | 주주총회 영향 미미 | 주주권 침해 없음 | 특이사항 없음 | 세부지침 언급 [*] | 기타 | 미기재 | 적정 기재 | 점검대상 운용사 |
| 운용사수 | 87 | 71 | 30 | 34 | 75 | 2 | 8 | 274 |
| (비중) | (31.8) | (25.9) | (10.9) | (12.4) | (27.4) | (0.7) | (2.9) | (100.0) |

^{*}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언급하지 않고 세부지침에 따라 찬성했다고 기재(11개사는 세부지침 미공시)

주요 사례

① 미흡 사례

3

- ✓ A사는 행사·불행사 사유를 '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함'으로 기재했으나,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음
- √ B사는 "찬성" 사유를 '특이사항 없음'으로 일괄하여 기재
- √ C사는 '주주총회 영향 미미' 등의 사유로 의결권 일괄 불행사

2 모범 사례

✓ D사는 재무제표 승인(안)과 관련하여 피투자회사의 배당성향이 0%로 업종 평균 대비 극히 적지만 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시설투자계획 등을 고려할 때과소 배당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는 점 등 찬성 사유를 상세 기재

②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의 형식적 공시

-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할
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을 공시해야 함에도,
- 121개사(44.2%)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을 공시하고,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고,
- 51개사(18.6%)만이 '23.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

< **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공시 현황** (단위 : 개사, %) >

| | | 세부지침 공시 | | 세부지침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구분 | '23.10. 개정 | 정 가이드라인 소계 | | 제구시점 미공시 | 합계 | |
| | 반영 | 미반영 | 포세 | 404 | | |
| 운용사 수 (비중) | 51 (18.6) | 102 (37.2) | 153 (55.8) | 121 (44.2) | 274 (100.0) | |

주요 사례

① 미흡 사례

√ E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기본정책에 '15.10월 시행령 및 '23.10월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으며, 안건별 세부지침도 미공시

[2] **모범 사례**

√ F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기본정책 및 세부지침을 모두 공시하였으며, 세부지침에 '23.10월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

③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 미준수

- 자산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할 때 공시 항목별 작성 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,
- 의안명(246개사, 89.8%)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, 의안 유형 (233개사, 85.0%)과 대상 법인과의 관계(198개사, 72.3%) 등 미기재

< 주요 공시서식 기재 오류 현황 (항목별 중복 가능, 단위 : 개사, %) >

| 구분 | 의안명 | 의안 유형 | 대상 법인과의 | 지분 비율 | 점검대상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미흡 기재 | 미기재 | 관계 미기재 | 오기재 | 운용사 |
| 운용사 수 (비중) | 246 (89.8) | 233 (85.0) | 198 (72.3) | 12 (4.4) | 274 (100.0) |

주요 사례

🗇 미흡 사례

- √ **G사**는 **의안명**에 해당 의안의 **상세내용**(예: 사외이사 ○○ 선임 등)을 기재하지 않고 "임원 선임의 건"으로 만 기재
- √ H사는 지분 비율 기재 시 발행주식수 대비 보유주식수를 기재해야 함에도 펀드 자산 중 해당 종목의 보유 비율을 기재함
- √ I사는 "재무제표 승인" 관련 안건에 대해 의안 유형으로 "결산 및 배당"을 기재해야 함에도 미기재

2 모범 사례

- √ J사는 피투자회사의 "감사(위원) 선임 및 해임(안)"에 대한 의안명을 "감사 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OOO선임의 건"으로 상세 기재
- √ K사는 지분비율 작성시 피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수 대비 보유주식 수에 해당하는 0.17%를 적절히 기재
- √ L사는 "서면의결권 행사제도 폐지 및 차입처 다변화를 위한 정관변경(안)"의 의안 유형을 "정관변경"으로 적절히 기재

4 의결권 불성실 행사

-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1,582개 안건*을 점검한 결과, 1,124건(71%)은 의결권 행사 사유의 불성실 공시로 판단 불가능
 - * '24.1분기 주총 안건(27,813개) 중 운용사별 행사방향이 다른 안건 추출
- 344건(21.7%)만이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했으며,
- 114건(7.3%)은 1%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의결권을 불행사하거나 내부지침과 다르게 행사하는 등 불성실 행사

< **의결권 불성실 행사 현황** (단위 : 건, %) >

| 눌 | 성실 행사 | 성실 | 판단 | 점검 | | | |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불행사* | 임원 임면 | 정관변경 | 임원 보수 | 기타 | 소계 | 행사 | 불가** | 대상 안건 |
| 61 | 24 | 23 | 3 | 3 | 114 | 344 | 1,124 | 1,582 |
| (3.9) | (1.5) | (1.5) | (0.2) | (0.2) | (7.3) | (21.7) | (71.0) | (100.0) |

^{*} 보유 지분율 1% 이상 ** 불성실공시(의결권 행사 사유 기재 미흡)로 인해 판단 불가

주요 사례

- □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정관 변경(안)에 대해 찬성
 - **甲사**는 사외이사의 수를 **'이사 총수의 <u>2분의 1 이상</u>'**으로 하는 **정관 변경**(안)을 **상정**했으나, 자산총계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인 甲사는 **사외이사 수를 '이사 총수의 과반수'**가 되도록 해야 함
 - (미흡 사례) M자산운용은 甲사 정관 변경안의 법규 위반소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정관 변경(안)에 찬성
 - (모범 사례) N자산운용은 甲사 정관 변경안이 **법규 위반소지**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관 변경(안)에 **반대**
- ② 내부지침에 반하는 임원 선임(안)에 대해 찬성
 - **乙사**는 '23년 이사회 출석률이 25%에 불과한 **X후보자**에 대한 **사외이사 재선임**(안)을 상정
 - (미흡 사례) O자산운용 내부지침에 따르면 '이사회 출석률 75% 미만' 후보자에 대해 반대해야 함에도, 별다른 사유 없이 X후보자 선임 안건에 찬성
 - (모범 사례) P자산운용은 '이사회 출석률 75% 미만'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도록 정하는 내부지침에 따라 X후보자 선임 안건에 반대
- ③ 내부지침에 반하는 임원 보수 중액(안)에 대해 찬성
 - 丙사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5% 감소했음에도 이사 보수 한도액 증액(안)(예: 40억원→ 80억원)을 상정
 - (미흡 사례) Q자산운용 내부지침에 따르면 이사 보수 결정시 '경영성과'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, 영업이익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丙사 안건에 찬성
 - (모범 사례) R자산운용은 이사 보수 결정시 '경영성과'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는 내부지침에 따라 보수 한도가 경영성과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반대
- ④ 상당 지분을 보유(예: 1%)하고 있음에도 의결권 불행사
 - (미흡 사례) S자산운용은 운용중인 펀드 내 丁사 주식 지분을 1% 이상 소유하고 있음에도, 주총 의사결정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의결권 불행사
 - (모범 사례) T자산운용은 운용중인 펀드 내 주식 지분을 1% 이상 소유한 戊사 등 36개사에 대해 내부지침에 따라 의결권 행사

4 명가 및 향후 계획

- □ 금번 점검 결과 기대와 다르게 대부분의 **자산운용사**들이 **의결권 공시대상 법인 위주로 의결권을 행사**하거나, **행사·불행사** 사유를 **형식적으로 기재하는** 등
 -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**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**하고, **공시**하도록 한 **자본시장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** 있는 것으로 **판단됨**
- □ 금융감독원은 펀드 **의결권 행사·공시**가 **형식적인 법령 준수**에 그치지 않고 **투자자**에게 **유의미한 정보**가 될 수 있도록
 - 금번 점검 결과 드러난 **미흡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**하여 **개선을 유도**하는 한편, 추후에도 **관련 점검을 지속** 실시할 계획임
- □ 아울러,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
 - 자산운용사가 **기업가치 제고** 및 **지배구조 개선** 등에 기여하는 **성실한 수탁자**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**꾸준히 지도**하겠음